##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574 발의연월일: 2025. 2. 28.

발 의 자: 박정하·최수진·신성범

배준영 • 김재섭 • 엄태영

박덕흠 • 한지아 • 김상훈

서일준 • 박정훈 • 이종욱

조은희 • 박수민 • 진종오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, 탄핵 또는 파면된 경우, 공금 횡령 등으로 해임되는 등의 경우에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지급을 일부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살인, 강간의 죄 등 특정강력범죄 및 마약에 관련된 범죄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이므로, 공무원 이 이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퇴직 급여 및 수당 지급을 더욱 엄중하게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 적이 있음.

이에 재직 중의 사유로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특정강력범 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지어 형이 확정된 경우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과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을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게 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제4항).

법률 제 호

###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중 "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에"를 "「국가보 안법」(제10조는 제외한다),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특정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"로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급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	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		
제한) ① ~ ③ (생 략)	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	<b>4</b>		
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			
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			
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			
의 죄), <u>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</u>	<u></u>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		
<u>는 제외한다)에</u> 규정된 죄를	는 제외한다), 「마약류 관리에		
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	관한 법률」, 「특정강력범죄의		
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	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		
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	1항 각 호에		
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			
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			